

2020년도 국민체감 예산안 20선

[목 차]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합니다.	1
2.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2
3.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3
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4
5.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충합니다.	5
6. 장애인연금 조기인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6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됩니다.	7
8.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8
9.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합니다.	9
10.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보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10
11.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지원합니다.	12
12.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13
13.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14
14. 정든 마을에 머무시며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십니다.	15
15.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드리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16
16.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기기를 개발합니다.	17
17.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합니다.	18
18.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구현합니다.	19
19.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를 가속화 하겠습니다.	20
20.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21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노정훈 과장, 044-202-3051)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생계급여	3,750,801	3,761,705	4,337,925	576,220	15.3

□ 사업 개요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20년 개선내용)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64세) 30% 신규 적용, 수급권자 재산기준 완화* 등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 기대 효과

- 빈곤 사각지대 완화 및 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

2.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자립지원과, 방석배 과장, 044-202-307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자활사업	490,959	524,002	602,164	78,162	14.9

□ 사업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창업준비, 사회성회복 등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탈수급 및 경제활동으로 복귀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있는 조건부 수급자, 희망하는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9) 4만8000명 (추경 1만명 별도) → ('20안) 5만8000명
- (지원내용) 자활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급여 지원
 - ('19) 일급 5만3400원 → ('20안) 5만6100원 (시장진입형 기준, 5%인상)
 - * 일 8시간 근무 기준

□ 기대 효과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빈곤층 근로의욕 제고 및 탈빈곤 의지 고취
-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 탈빈곤 지원

3.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자립지원과, 방석배 과장, 044-202-307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78,090	78,090	107,091	29,001	37.1

□ 사업 개요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혹은 차상위 청년(만15세~39세)
 - ('20안) 신규 8,000명 지원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30만원)을 매칭 (1:3) 지원(3년 적립, 총 1,440만원)

□ 기대 효과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탈빈곤 지원

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 044-202-334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장애인활동지원	1,003,461	1,014,902	1,275,172	260,260	25.6

□ 사업 개요

-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사활동,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을 지원
- (이용방법) 읍·면·동에 신청하면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서비스 급여량 차등 부여

□ 지원 내용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대상자 확대(중증→모든 장애인), 급여량 증가(인원 및 월평균 시간), 보전조치 시행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인원) ('19년) 81,000명 → ('20년) 90,000명 (↑9,000명)
- (월평균 시간) ('19년) 109시간 → ('20년) 127시간 (↑18시간)
- (보전조치)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 감소자에 대한 보전조치 : 갱신자 30,000명에 대해 월평균 +10시간

□ 기대 효과

- 장애인 사회활동 활성화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5.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충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 044-202-334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발달장애인 지원	42,720	42,720	85,499	42,779	100.1

□ 사업 개요

-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내용

- (주간활동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19) 2,500명 → ('20안) 4,000명(신규 1,500명)
- (방과후활동 지원대상)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 ('19) 4,000명 → ('20안) 7,000명(신규 3,000명)
- (지원내용) 월 88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단축형 44시간, 기본형 88시간, 확장형 120시간) 및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공
 - (서비스단가) '19년 12,960원 → '20년안 13,350원

□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사회성 향상,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6. 장애인연금 조기인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 044-202-332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장애인연금	719,735	719,735	786,181	66,446	9.2

□ 사업 개요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 ('19년)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이하
- ('19) 36만7천명 → ('20) 37만8천명
-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을 25.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 '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시기 변경('20년 4월→'20년 1월)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추가

□ 기대 효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 강화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됩니다.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 044-202-3465)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45,802)	(245,802)	372,797	126,995	51.7

□ 사업 개요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노인(거동불편, 독거 등)에게 예방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9) 35만명 → ('20안) 45만명(신규 10만명)
- (지원내용)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기존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 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직접 서비스 (방문, 통원 등) ※ 4개 분야 17개 이상 서비스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방문, 전화) ▶ 말벗	▶ 화재예방, 응급상황 시 대처법 등 안전교육
	사회참여	▶ 자조모임	▶ 친구만들기
	생활교육	▶ 건강운동 ▶ 구강관리 ▶ 영양섭취 ▶ 식사준비	▶ 낙상예방 ▶ 인지저하예방 ▶ 질환 증상 및 관내 의료기관 등 건강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 지원	▶ 병원동행 ▶ 외출동행 등 이동지원 ▶ 장보기	▶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 ▶ 신체 수발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		▶ 도배·장판, 대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 의치보철 지원, 보청기 지원, 구강진료 지원 ▶ 선풍기·에어컨, 전기매트·난로 등 혹서기·혹한기 물품 지원 ▶ 푸드뱅크, 쌀·김치 등 식품 지원 ▶ 나들이 지원, 문화체험 지원 등	

□ 기대 효과

- (돌봄수요 충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예방 강화) 장기요양 이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

8.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서일환 과장, 044-202-367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기초연금지급	11,495,198	11,495,198	13,176,531	1,681,333	14.6

□ 사업 개요

-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19년 기준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기준연금액) '20. 1월 인상(예정,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 소득하위 40%이하 월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

- 소득하위 40%초과 70%이하 월 최대 26만원*(단독가구 기준)

* '19년 기준연금액(253,750원)에서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년 인상 예정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소득 분배 개선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지급으로 노인 빈곤 문제 완화 및 안정적인 노후 소득기반 제공

9.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합니다.

(노인지원과, 이주현 과장, 044-202-347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22,022	922,761	1,199,064	276,303	29.9

□ 사업 개요

- 어르신이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단,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유 형	내 용	대 상	일자리수
노인 사회 활동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23개,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청소년 선도 등)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	54.3만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한 노인공익증진 활동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만 60세 이상	3만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 수요가 높고, 공익 기여도가 높은 활동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온종일 마을돌봄 등)	만 60세 이상	3.7만
	시장형사업단 소규모 매장·전문 직종 사업단 등 공동 운영하여 수익창출 (실버카페, 반찬가게, 지역영농 사업 등)	만 60세 이상	6만
	취업알선 교육수료자 또는 업무능력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가사·간병인, 경비원, 지역일손 도우미 등)		5만
	시니어인턴십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1.8만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고용기업 지원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등)		0.2만

* 단, 일자리 내용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 백세포탈 (www.100senuri.go.kr) 에서 노인일자리 정보 검색 가능

- (사업규모) ('19) 61만개 (추경 3만명 별도) → ('20) 74만개

□ 기대 효과

- 저소득층(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참여대상인 공익활동 중심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 빈곤 완화 기여
- 노인일자리 확대 통한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 지원

10.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보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보육사업기획과, 이윤신 과장, 044-202-3560)

(공공보육팀, 백경순 팀장, 044-202-3552)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영유아보육료 지원	3,405,282	3,405,282	3,405,574	292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186,829	1,186,829	1,378,069	191,240	16.1

□ 사업 개요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 여건 개선,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추진을 위한 보조·연장보육 교사 지원

□ 지원 내용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보육지원체계 개편*('20.3월)에 따른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을 기본·연장보육으로 나누고 각 보육시간에 전담보육교사 배치

- 보육료 : '19년 종일반 대비 3% 인상
 - ('19) 689천명 → ('20안) 653천명(△5.2%*)
 - *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 수 감소

- 연장보육료 지원(신규) : 0~2세 시간당 2천원, 3~5세 시간당 1천원
 - (0~2세) 144천명, (3~5세) 122천명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지원대상) 보조 및 연장보육 교사는 각각의 별도 지원 기준 적용
 - (보조교사)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70%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1개소당 최대 3명 지원
 - (연장보육교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지원
- (지원방법)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대상 선정·통보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 매월 보조·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 ('19) 4만명 → ('20안) 5.2만명(신규 1.2만명)
 - 보조교사 지원(국고보조율 50.8%)
 - 지원단가 : ('19) 월 973천원 → ('20안) 월 1,002천원, 29천원 인상
 - *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기준 급여
 - 채용대상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기대 효과

-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시간 보육 내실화
-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11.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배금주 단장, 02-6383-2023)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12,560)	(12,560)	19,009	6,449	51.3

□ 사업 개요

- 포용적 복지국가 아동정책 총괄기관으로 설립('19.7.16.)된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 지원 내용

- ‘포용국가 아동국가책임제’(5.23일 정부합동발표) 구현을 위한 핵심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 내용) 입양, 아동학대 예방,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민간에 분산·운영 중인 8개 사업 중앙조직을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

□ 기대 효과

- 요보호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 보호, 보호 종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아동중심”으로 연속적·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의 놀 권리 기획 등 총괄적 관점의 아동정책 지원

12.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인구정책총괄과, 배경택 과장, 044-202-337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다함께 돌봄 사업	10,635	10,635	33,845	23,210	218.2

□ 사업 개요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 확충 및 지원
-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일시·긴급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도,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급간식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료) 월 10만원 내(수납한도 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추가 부담 가능)
- (지원규모) '20년 550개소 추가 설치 목표 * '19년 150개소 신규설치예정
- (지원예산) 설치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
 - 설치비 : 개소당 리모델링비 최대 50백만원(국비 서울30%, 지방 50%) + 기자재비 20백만원 국비전액 지원
 - 인건비 : 개소당 센터장 1인, 돌봄교사1인 인건비 최대 50백만원 (국비 서울 30%, 지방 50%) 지원
 - 운영비 : 센터당 월 30만원(국비 서울30%, 지방 50%) 지원

□ 기대 효과

-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맞벌이 가구 돌봄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여성경력단절 해소 및 안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13.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정책과, 성창현 과장, 044-202-341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아동수당 지급	2,162,729	2,162,729	2,283,374	120,645	5.6

□ 사업 개요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 (국정과제 42-2)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을 통한 기본적 소득 보장
 - (국정과제 48-3)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19) 273만명(234만명×12개월+ 39만명×4개월) → ('20안)264만명(12개월)
 - * (경과) '18. 9월, 소득재산 90%이하 만 6세 미만 → '19.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3월분 소급) → '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
 - *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시기)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前)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

□ 기대 효과

-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을 통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14. 정든 마을에 머무시며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십니다.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 044-202-369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A)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6,393	9,542	17,764	8,222	128

□ 사업 개요

-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 * 방문형 의료, 건강관리, 돌봄, 요양 및 주거지원 등 서비스 통합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19) 8개 시군구*(4~7개월) → ('20안) 16개 시군구(12개월)
 - * 추경 8개 시군구 별도
- (지원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지원내용)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실시
 - ①서비스 안내, 신청접수·대행 등을 위한 통합돌봄 안내창구 및
 - ②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 대상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보건의료(왕진 등),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통합
 - * 주택 개보수, 가사·간병 지원, 이동 지원, 식사 제공 및 건강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

□ 기대 효과

-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 가능

15.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드리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임근찬 단장, 044-202-384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A)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0,943	40,943	118,906	77,963	190.4

□ 사업 개요

- '행복e음', '복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기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전면 개편('21.9월부터 단계적 개통)

□ 주요 내용(차세대 시스템에서 도입되는 주요 기능)

- (복지멤버십) 출산·실직·질병 등 중요한 상황변동이 발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 개인의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판정을 통해 신청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안내

- (신청 간소화) 온라인 신청 사업 확대(19→41종), 온라인 신청률 제고*, 신청·접수창구 확대** 등 복지사업 신청을 간소화

* 온라인 신청 비율 : ('18년) 16% → (향후) 40% 이상 목표

** 병원·복지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한된 신청·접수지 완화 등

- (半자동 조사·결정) 일정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결정하지 않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급 여부 결정

□ 기대 효과

-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 도입, 복지 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기대

16.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기기를 개발합니다.

(의료기기 · 화장품 산업T/F팀, 모두순 팀장, 044-202-2963)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A)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 개발사업(R&D)	-	-	4,800	4,800	순증

□ 사업 개요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통해 보조기기 산업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원 내용

- (개발)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보조기기로 리프트·휠체어 등을 위한 모듈, 배터리모듈, 욕실/화장실용 공통모듈, 승강용·근력증강용·레저/레크리에이션 보조기기 등 연구개발
- (구축) 다양한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개발지원을 위한 사용자 참여 연구개발 생태계 기반 조성

□ 기대 효과

- 경쟁력 있는 보조기기 모듈/제품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생활편의 증진 기여
-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17.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합니다.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 044-202-253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A)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113,449	113,449	126,420	12,971	11.4
(지방의료원 등 기능보강사업)	(99,372)	(99,372)	(109,677)	(10,305)	(10.4)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3,100)	(3,100)	(4,300)	(1,200)	(38.7)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4,921)	(4,921)	(5,500)	(579)	(11.8)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750)	(750)	(1,800)	(1,050)	(140)

□ 사업 개요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방의료원 등 기능보강)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등을 위한 지방 의료원 증축 및 시설·장비보강 지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권역-지역 단위 필수의료 강화 네트워크 구축, 퇴원환자 연계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 ('19) 국립대병원 10개소 → ('20안) 국립대병원 12개소, 지방의료원 15개소
- (파견의료인력 지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 등으로부터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시 인건비 지원(50명 → 55명)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시도의 정책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7개 시도→ 12개 시도)

□ 기대 효과

-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 해소

18.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구현합니다.

(치매정책과, 민영신 과장, 044-202-353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A)			
치매관리체계 구축	236,356	236,356	211,435	△24,921	△10.5

□ 사업 개요

- 중앙·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중증치매환자 공공후견 등

□ 지원 내용

-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운영 지원
 - ('19)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정식개소 완료 → ('20안)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서비스 내실화
- 공립요양병원 7개소 치매전문병동 확충
 - ('19) 치매전문병동 6개소 → ('20안) 치매전문병동 7개소*
 - * 대전, 광주, 경기 여주, 경기 용인, 경기 동두천, 충북 영동, 전남 광양
- 치매공공후견 지원 확대
 - ('19) 후견인 심판절차 비용, 중앙지원단 운영비 지원 → ('20안) 후견인 활동비, 후견인 양성교육, 광역지원단 운영비 신규편성

□ 기대 효과

-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서비스 내실화 추진, 이상행동증상이 있는 중증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지속 확충 및 치매공공후견 제도 보완을 통한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19.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를 가속화 하겠습니다.

(결핵에이즈관리과, 공인식 과장, 043-719-7310)

(결핵조사과, 박미선 과장, 043-719-728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A)			
국가결핵예방	44,677	44,677	46,356	1,679	3.8

□ 사업 개요

- 결핵퇴치 가속을 위해 ①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 ② 취약계층 검진지원을 통한 조기발견 및 사각지대 해소 ③ 국산 BCG 개발 등 국가결핵예방

□ 지원 내용

-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
 -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전담간호사 배치 확대
 - * (보건소/의료기관) ('19) 259명/258명 → ('20안) 668명(+409)/297명(+39)
- 취약계층 검진지원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사각지대 해소
 -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검진 강화
 - * ('19) 일부지역 노인검진 시범사업(5.6억원) → ('20안) 전국 의료급여수급권자·와상 노인 및 노숙인 등 이동검진(37억원)
 -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확대
 - * ('19) 7개소 7.7억원 → ('20안) 10개소 11억원
- 국산 BCG 개발 지원을 통한 자급화 추진
 - * (국산BCG 개발) ('19) 37억원 → ('20안) 45억원

□ 기대 효과

- 결핵발병 고위험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기검진·환자관리 철저로 결핵 조기 퇴치 달성

20.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예방접종관리과, 김건훈 과장, 043-719-8350)

(백만원)

세부사업명	'19예산		'20(안)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A)			
국가예방접종 실시	328,367	328,367	335,232	6,865	2.1

□ 사업 개요

- 국가예방접종의 국가지원 확대 및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지원 내용

- (4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만 6개월 ~ 12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4가백신 무료접종 지원
 - ('19) 3가 지원, 1,375만명 → ('20안) 4가 지원 1,412만명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A형간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고위험군(20~40대 만성질환자 등) 대상 A형간염 2회 무료접종 지원
 - ('20안) 대상자 25만명, 접종자 7.8만명(신규)

□ 기대 효과

-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으로 효과적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
-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중증 사례 예방